

# 忠清北道教育委員會本會議會議錄

(第 1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 목 차

1. 제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1차 본회의 .....	3
2. 제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개원식 .....	11
3. 제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2차 본회의 .....	18
4. 부 록 .....	25
1) 교육위원 의석 배치도 .....	27
2) 의사일정(안) .....	28
3) 간부명단 .....	29
4) 주요업무보고 .....	35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안 .....	63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청원심사규칙안 .....	83
7) 충청북도교육위원신분증규칙안 .....	89



제 1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 1 호

# 본 회의 회의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

1991년 9월 2일(월요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1. 의장, 부의장 선출
2. 의석 결정
3. 회기 결정

부의된 안건

1. 경과 보고
2. 의장, 부의장 선출
3. 의장(김 영 세) 당선 인사
4. 의장, 부의장 선출(계속)
5. 부의장(김 광 수) 당선 인사
6. 의석 결정
7. 회기 결정

(오전 10시 개의)

1. 경과보고

○ 의사국장 민병수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 민병수입니다. 여러교육위원님들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제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지난 8월 10일 충청북도의회의 교육위원 선출에서 모두 열(10)분의 교육위원님이 당선되었으며, 오늘까지 열(10)분위원 전원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충청북도교육감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원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출과 제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이며, 제1차 본회의 산회 후에는 14시부터 개원식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교육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선거를 위한 사회는 최연장 교육위원이신 장충호위원님이 임시의장직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행 의장석으로 나옴)

○ 의장직무대행 장충호 : 임시의장직을 맡은 장충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천학비재하고 부덕한 사람인데 단지 연장자라해서 이 역사적인 교육위원회 임시회의에 사회를 맡게 된 것을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반면에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사 진행중 잘못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서는 충북 교육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데 다같이 협력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꼭 참석하셔야 될 청원군 교육위원이 참석치 못한것을 우리 모두가 유감으로 생각하며 빠른 시일내에 충원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분)

## 2. 의장·부의장 선출

○ 의장직무대행 장충호 : 먼저 의장과 부의장 선출에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장·부의장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는 자가 의장으로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이에 최고 득점자를 당선자로 하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음성의 권혁풍위원장님, 충주의 이상일 위원님 이상 두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좌석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먼저 자리에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석으로 이동)

그러면 투표방법은 의사과장으로 부터 설명이 있은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 의사과장 이영규 : 투표방법에 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투표는 이 전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에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도 임시의석을 기준으로 하여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교육위원님께서서는 직원석 준비요원으로 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앞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

표용지 뒷면 공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교육위원님의 성명을 한글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나오셔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

이제 투표를 위한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수위원장님, 김사수위원장님, 김영세위원장님, 김응복위원장님, 박병해위원장님, 이근수위원장님, 이재희위원장님, 권혁풍위원장님, 이상일위원장님, 준비요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투표 실시)

○ 의장직무대행 장충호 : 여러 위원님께서 다 투표를 하셨습니까? 안하신분 안계시죠? 그러면 투표를 다 했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열고 명패수 계산)

명패함을 열어서 헤아려본 결과 명패수가 열(10)개에서 한분도 착오가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열고 투표수 계산)

투표수도 열(10)매로서 명패와 일치합니다.

다음은 투표결과를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중 김영세위원 7표, 박병해위원 3표로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로 득표한 김영세위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은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임 의장께서 나오셔서 지금부터 당선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의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의장 사회대 등단)

(10시 19분)

### 3. 의장(김영세) 당선인사

○ 의장 김영세 : 존경하는 장충호 임

시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동지여러분 정인영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동지여러분, 그리고 언론계에 여러 선생님, 오늘 우리 충청북도의 교육위원회에 의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 주신데 대해서 우선 먼저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부덕한 이 사람으로서는 일대의 영광이 아닐 수 없으며 더구나 앞으로 책임에 무거움을 더욱 간절히 느끼면서 열심히 노력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여러교육위원님들의 높으신 뜻을 부덕한 사람이나마 여러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받들어서 저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이자리에는 우리 도에 150만 도민의 교육자치에 대한 염원과 13,000여 교육동지들의 기대가 충만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점을 깊이 명심해서 명실상부한 교육위원회의 위상 정립을 도모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교육발전에 혼신에 노력을 하고 온갖 정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분들의 높으신 뜻을 하나로 뭉쳐서 이제 우리에게 주



어진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게끔 열심히  
합심해서 우리 충북도 교육장달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  
나마 인사로 가늠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일동박수)

○ 의장직무대행 장충호 : 여러위원님  
들 협조를 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  
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신임 의장으로 선출되신 김영세의장  
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신임의장과 임무교대)

(10시 23분)

4. 의장, 부의장 선출(계속)

○ 의장 김영세 : 새로 구성된 교육위  
원회 의장으로 뽑아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막중한 책임도 통감합니다.

앞으로 여러위원님들과 협력하여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해 진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의장을 선출하겠습

니다.

의장 선출에서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  
원께서는 다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석으로 이동)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과장은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 의장 선거와 동  
일한 방법으로 먼저 명패함과 투표함 점  
검이 있겠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

이제 호명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김사수위원님,

김응복위원님, 박병해위원님,

이근수위원님, 이재희위원님,

장충호위원님, 권혁풍위원님,

이상일위원님,

준비요원은 의장님께 투표용지와 명  
패를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세 투표 실시)

○ 의장 김영세 :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p>(명패함 열고 명패수 계산)</p> <p>지금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정확히 10매입니다.</p> <p>이상 없습니다.</p> <p>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p> <p>(투표함 열고 투표수 계산)</p> <p>투표수도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p> <p>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p> <p>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p> <p>(계 표)</p> <p>총 투표수 10표중 김광수위원 10표 전원 추대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광수위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p>(10시 35분)</p> <p>5. 부의장(김광수)당선인사</p> <p>○ 부의장 김광수 : 부의장으로 당선된 김광수입니다.</p> <p>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p> <p>천학비재하고 부덕한 사람이 이 소임을 충분히 감당해 나갈까 극히 염려스럽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의해서 의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p> <p>감사합니다.</p> <p>(일동박수)</p>
<p>(의사봉 3타)</p> <p>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p> <p>그러면 부의장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p> <p>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광수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부의장 김광수 사회대 등단)</p>	<p>(10시 36분)</p> <p>6. 의석결정</p> <p>○ 의장 김영세 : 다음은 본회의 의석결정을 하여야 되겠습니다.</p> <p>의석결정은 의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코자 합니다.</p> <p>우선 부의장석은 의장직무대행에 대비하여 앞에 배치하겠습니다.</p>

기타위원 의석배치에 있어서는 국회  
위원의 경우처럼 가, 나, 다 순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충청북도 의회처럼 지  
역순으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연령순으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 의석 배치를 어떤 방  
법으로 하는것이 좋은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침묵)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 권혁풍 위원 : 의장님께 일임하겠  
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네! 의장에게 일임  
해 주시겠습니까?

(“일임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역순으로 충청북도의회 예를 따라서  
부의장석을 제일 앞으로 하고 지역순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회 유인물로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를 9월 2일 부터 3일까지 2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1일차인 오늘은  
원구성, 회기결정 및 개원식을 하고, 2  
일차인 9월 3일은 교육청 업무보고 및  
회의규칙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심으로 제1회 충청북도교  
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91년 9월 2일  
부터 9월 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 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에 앞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개원식이 거행됩니다.

이때 위원여러분들의 위원선서가 있  
겠습니다.

교육위원 선서를 하셔야 실제로 주민과  
교육관계자 여러분앞에 교육위원으로서  
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한가지

(10시 38분)

## 7. 회기 결정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제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p>결정할 것이 있습니다.</p> <p>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위원님을 두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p> <p>의장이 지명하여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p> <p>김응복위원장님, 이상일위원장님, 이렇게 두분을 선출코자 합니다.</p> <p>이의가 없으십니까?</p>	<p>(“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p> <p>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p> <p>(의사봉 3타)</p> <p>두분 교육위원님께서서는 앞으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p> <p>감사합니다.</p> <p>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p> <p>(의사봉 3타)</p> <p>(10시 41분 산회)</p>
<p>○ 출석위원수 : 10명</p> <p>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의장직무대행 장충호, 위원 권혁풍, 김사수, 김응복, 박병해, 이근수, 이상일, 이재희.</p> <p>○ 교육위원 의석배치도 : 별첨 1.</p> <p>○ 의사 일정 : 별첨 2</p>	

#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

1991년 9월 2일(월요일) 오후 2시

## 제 1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원식순

1. 개 식
2. 국민의례
3. 교육위원 선서
4. 대통령 메시지 낭독
5. 개 회 사
6. 교육부장관 축전 낭독
7. 교육감 축사
8. 폐 식

(사회 : 의사과장 이영규)

(14시 개식)

○ 의사과장 이영규 : 지금부터 충청  
북도교육위원회 개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녹음 주악과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

· 바 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된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 전주에 따라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 목    념

(녹음 주악)

· 바    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위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문을 왼손에 드시고 오른손을 들어 의장님의 선창에 따라 한구절씩 복창으로 선서를 마치신 다음에 의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위원님 좌석 순으로 한분 한분 성명을 말씀해 주신다음에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일동 일어남)

○ 의장 김영세 : 선서(위원들 복창)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위원들 복창)  
우리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위원들 복창)

교육위원의 직무를(위원들 복창)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위원들 복창)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위원들 복창)

1991년 9월 2일 충청북도교육위원 김영세, 김광수, 이상일, 이재희, 김응복, 이

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의사과장 이영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다만 개회사에 앞서 대통령께서 “새로운 시·도 교육위원회 개원에 즈음하여” 메시지를 보내 오셨기에 이를 의장님께서 교육위원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새로운 시·도 교육위원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오늘 우리나라 교육의 밝은 앞날을 이끌어 갈 새로운 시·도 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먼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지역사회로부터 선출된 교육위원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며, 시·도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되어 지방자치의 실현된데 이어 교육위원회가 발족함으로써 이제 교육자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는 모든 분야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있는 이시대 우리 모두가 이룬

보람입니다.

교육은 민주주의와 번영의 활력이 넘치는 오늘의 이나라를 이루어온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풍요로운 선진복지국가를 만들고 통일  
의 날을 앞당길 원동력도 교육에서 얻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과 문화의 가치가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민주주의가 생활속에 뿌리 내리는 사회를 건설해야 하며 교육은 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그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좌우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세계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은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도 새로운 세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개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도 교육환경과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시설을 확충하는데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교육자치의 실시로 우리교육은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았습니다.

내 고장에서 훌륭한 교육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주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위원여러분은 우리 교육의 민주화, 현대화, 지방화를 앞장서 이끄는 주역으로서 고장의 교육창달에 지역사회와 주민 모두의 창조적인 역량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교육위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991년 9월 2일

대통령 노태우 대독

○ 의장 김영세 : “개회사” 오늘 마침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개원을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게 뜻을 모아 주시어 이 의미 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유성종 교육감님, 도의회 의장님, 문사위원장님, 그리고 귀빈여러분을 같이 모시고 개회사를 하게 되니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보다 획기적인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지방교육자치의 초대 교육위원으

로서 금지 또한 새롭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육위원회는 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다룸에 있어서 교육감과 함께 했던 종전의 합의제 기관이 아닌 주민 대표 기관에 의해 선출된 우리가 중심이 되어 독자적으로 해 나가는 심의·의결 기관인 만큼 우리는 그 권한에 앞서 교육 일꾼으로서의 역할과 책무가 막중하고 지방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려 우리 충북의 교육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소명의식 그리고 150만 도민이 교육자치의 핵심으로서의 우리들에게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는 데에 연유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 충북이 교육의 고장으로 이름을 떨쳐오고, 선진된 교육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에도 기인하는 결과에 있겠습니다만, 그간 우리 충북 교육계를 이끌었던 전임 교육계 선배님들이 쌓아올린 공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마음과 뜻을 맞추어 화합으로 이 발판위에 우리가 해나갈 일들을 착실히 이어서 지방교육자치가 목표로 하는 교육발전에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위원님!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손에 힘을 주어 모두들 노를 잡았습니다.

이 공동 운명체로서의 우리는 하나 하나 매듭을 풀어가야 할, 우리가 마땅히 해나갈 일들을 바로 앞에 놓고 있습니다.

곧,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여건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하는 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반 장애를 무릎쓰고 뒷받침 하는 일,

도시와 농촌의 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모색하는 일,

열악한 농촌·산촌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

이런 일들이 앞에 있고,

32만여 우리 아들딸들을 가르치시는 1만 3천여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존경 받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안전될 수 있도록 지위를 향상시키는 문제와, 선생님들이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교권을 회복·확립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의 실현은 충



분한 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빈약한 우리 도의 교육재원을 확충하는 일도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 이겠습니다.

이상의 이런 일들을 의원 한분 한분 들이 학부모, 교사, 학생의 입장에서, 또 경영자 입장에서, 그리고 지역대표의 입장에서, 평소에 품고 있던 생각과 소신 들이므로 고루 반영되어 열매로 맺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산적해 있는 어렵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우리 모두의 확고한 소신과 자립의지 없이는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위원님들!

교육자치도 주민자치이므로 지역주민 들이 교육에 대하여 요구하고 바라는 것 에 귀를 기울여 민의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가정, 학교, 교육청을 잇는 거멀 못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교육선진 충북을 이룩하는데 앞장서는 동시에 참다운 지방교육이 정착되도록 힘써야 겠 습니다.

우리 위원 열 명으로 구성돼 있는 이번

교육위원회는 위원구성상 회귀성과 특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육 경력상 우리를 경력자 6명, 비교육자 4명으로 구분합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률상의 기준에 의해서이고, 우리는 열명 모두가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41년까지 실제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일은 전국 다른 지방에서는 있기 드문 일로 이 특수성이 우리 충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묘를 최대한 살려봅시다.

오늘 충북교육계에 새로운 역사의 장이 또 하나 열리는 이 뜻 깊은 자리를 빛내 주시고자 참석하신 도의회 한현구의 장님, 한장훈문사위원장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교육위원은 모름지기 교육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며, 교육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되새기면서 이에 줄이려 합니다.

아무쪼록 맥내에 평안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9월 2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 김영세

(일동 박수)

○ 의사과장 이영규 : 다음은 유성중 교육감님께서 교육부장관님의 축전을 낭독해 드린 후 축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 발언대에 나옴)

○ 교육감 유성중 : 윤희섭 교육부장관의 축전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육위원여러분의 풍부한 경륜과 교육에 대한 사랑이 지역주민에 대한 헌신적 봉사로 꽃피워 풍요로운 교육적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며,

교육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1년 9월 2일

교육부장관 윤희섭

○ 교육감 유성중 : 존경하는 의장님과 교육위원여러분 다시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분의 당선과 등원 그리고 개원을 축하하고 전체 교육가족과 함께 여러분의 교육위원직 직무수행에 영광이 계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광복후 여러차례의 교육자치제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특히 현재의 체제와 유사한 1964년도 이후의 이른바 시·도 단위 교육자치라고 하는 체제는 사실상 지방의회의 부재속에서 교육부 장관이 교육위원을 임명하는 이른바 관선 교육위원 체제로 또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상당한 기간을 교육자치의 준비 기간으로서 그 기구를 유지해온 셈입니다.

오늘 제1대 그리고 제1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출범하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는 진실로 한국의 교육사 또는 충북의 교육사에서 하나의 역사의 획을 긋는 큰 의미를 갖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진정 민의의 시대라고 하는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욱 전 도민과 함께 그 영광의 주역으로서의 여러분들을 축복을 드리고 축하를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교육은 바야흐로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교육이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이름위에 다 똑같은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간 소외에서 인간 회복 교육을 고창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계가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 기술 추구를 하면 할수록 사실상 세계는 지금 교육 경쟁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강력한 의욕을 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가장 의욕적인 나라가 물론 한국입니다.

또한 그 속에서의 충청북도 교육입니다.

저희는 타도에 뒤떨어지지 않고 특별시와 직할시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충북 교육을 건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고 또한 앞으로도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지도하에 그와 같은 목표를 추구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의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과의 저희들의 관계를 제가 잠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의 교육위원회는 한 울타리의 한 기관이었습니다마는 오늘서부터 이제 정식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와 충청북도교육청은 별개의 기관으로 양립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법률적으로 제정해 놓은 그어떠한 성격 규정의 대척적인 그런 관계인 것보다는 차라리 충북교육을 위한 보완적인 관계로 그리고 법률적인 관계인 것 보다는 차라리 저는 비공식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적인 관계를 새로이 문자 그대로 창출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교육감의 직책을 통해서 여러교육위원님들과 이런 관계를 맺고 충청북도 교육을 새롭게 또 새롭게 그리고 더 높게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감히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바라건대 존경하는 의장님과 교육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일신에는 건강이 그리고 업무에는 봉사의 영광이 가득하시고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교육의 전진적인 성취적인 동반자가 되실것을 감히 그리고 간절히 한편으로는 다짐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거듭 축복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 의사과장 이영규 :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개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 20분 폐식)

#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

1991년 9월 3일(화요일) 오전 10시

의 사 일 정(제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1. 충청북도 교육위원회회의규칙안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청원심사규칙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신분증규칙안

부 의 된 안 건

1. 간부소개
2. 도 교육청 업무보고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안(의장 제의)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청원심사규칙안(의장 제의)
5. 충청북도교육위원신분증규칙안(의장 제의)

(오전 10시 개의)

○ 의장 김영세 : 교육위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이영규 :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일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청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에 대한 통보가 있었으며, 동일 의장님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충청북도교육위원

회청원심사규칙, 충청북도교육위원신분  
증규칙안 등 3개의 규칙안이 제의되었습니다.

안전내용은 기히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분)

1. 간부소개

○ 의장 김영세 : 의사 일정에 따라 교  
육청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  
다.

(교육감 발언대 나눔)

○ 교육감 유성증 : 존경하는 의장님,  
위원님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제 뜻있는 교육위원회 개원을 순성  
시키고 그리고 오늘 다시 이렇게 2차 본  
회의를 맞게 되었습니다.

절차에 따라 저희 충청북도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정인영장학관입니다.

(일동 박수)

신설된 옛날의 학무국이 분리되어서  
초등교육국이 생겼습니다.

초등교육국장 홍영창장학관입니다.

(일동 박수)

이번에 새로 생긴 중등교육국장에는  
나세웅장학관이 보임됐습니다마는 현재  
해외출장중입니다.

관리국장 김근학서기관입니다.

(일동 박수)

공보담당관 신택회사무관입니다.

(일동 박수)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찬사무관입니다.

(일동 박수)

행정관리담당관 정현동사무관입니다.

(일동 박수)

지금 말씀드린 이 두자리는 곧 기획  
관리관의 산하 부서로 그렇게 묶여질 거  
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이근수사무관입니다.

(일동 박수)

지금서부터는 옛날의 학무국의 신설  
부서가 되겠습니다.

초등교육국 초등장학과장 채선병장학  
관입니다.

(일동 박수)

초등교육국 초등교직과장 김재성장학  
관입니다.

(일동 박수)

중등교육국 중등장학과장 윤혁중장학

관입니다.

(일동박수)

중등교육국 중등교직과장 심태섭장학  
관입니다.

(일동 박수)

중등교육국 과학기술과장 전태식장학  
관입니다.

(일동 박수)

중등교육국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의  
장학관입니다.

(일동 박수)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명칭이  
사회교육체육과장이라는 것으로 바뀌었  
습니다.

관리국입니다.

행정과장 엄갑도사무관입니다.

(일동 박수)

재무과장 고일영사무관입니다.

(일동 박수)

시설과장 박성근건축기좌입니다.

(일동 박수)

다음은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연구원 박동기연구관입니다.  
원장님이십니다.

(일동 박수)

충청북도과학교육원 원장 김병학연구

관입니다.

(일동 박수)

현재 이 부서는 충북과학고등학교 교  
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단재교육원 원장 남광현장학관입니다.

(일동 박수)

충청북도중앙도서관 관장 문종철서기  
관입니다.

(일동 박수)

충청북도 학생종합야영장 장장 이종  
록 서기관입니다.

이 위치는 지금 진천군에 있습니다.

(일동 박수)

다음에는 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하겠  
습니다.

청주교육청 교육장 양금연장학관입니다.

(일동 박수)

최근에 직제가 바뀌는 과정에서 교육  
장들이 전부 장학관으로 보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육장이 직위이자 직명이  
었는데 이제부터는 장학관으로 교육장을  
보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충주교육장 권순무장학관입니다.

(일동 박수)

제천교육장 정철진장학관입니다.

(일동 박수)

청원교육장 김영명장학관입니다.

(일동 박수)

보은교육장 김천규장학관입니다.

(일동 박수)

옥천교육장 이희영장학관입니다.

(일동 박수)

영동교육장 정환수장학관입니다.

(일동 박수)

진천교육장 김석제장학관입니다.

(일동 박수)

괴산교육장 장병은장학관입니다.

(일동 박수)

음성교육장 박정서장학관입니다.

(일동 박수)

단양교육장 조시영장학관입니다.

(일동 박수)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신다면 저희 업무보고는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발언대 나옴)

(10시 8분)

## 2. 도교육청 업무보고

○ 부교육감 정인영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앞에서 저희 교육청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  
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들이 유인물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  
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청의 금년도 주  
요업무 계획과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연혁, 일반현황, 충  
북교육의 지향, 91년도 주요업무 계획,  
주요현안 과제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별첨된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해서 상  
세히 설명)

이상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까지의 추진상  
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 의장 김영세 : 정인영 부교육감님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받으신 주요업무에 대한

의문 사항은 원칙적으로는 질문서로 보충 답변을 청취할 계획입니다마는 부득이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꼭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침묵)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에 서면상으로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청원심사규칙안

5. 충청북도교육위원신분증규칙안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청원심사규칙안, 충청북도교육위원신분증규칙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업무보고하신 관계관들께서 퇴장을 하실 필요가 있어서 잠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11시)

○ 의장 김영세 :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전에 상정한 3건 모두 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꼭 필요한 규칙이기에 사전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규칙안중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추후 최선의 규칙이 되도록 개정키로 하고, 최초 교육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 규칙안을 의결에 붙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원안에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영세 : 이어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청원심사규칙안입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부의장 김광수 : 원안에 동의합니다.

○ 권혁풍 위원 :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의장 김영세 : 김광수위원의 동의에 이어 권혁풍위원의 재청이 들어왔고 여러위원들도 이의가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신분증규칙안입니다.

○ 부의장 김광수 : 의결에 앞서 교육위원신분증규칙안의 제정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영세 : 의사국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 의사국장 민병수 : 교육위원신분증규칙안 제안사유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은 교육위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 의장 김영세 : 설명이 되겠습니까?

○ 부의장 김광수 : 그럼 교육위원신분증규칙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나 경위가 됩니까?

○ 의사과장 이영규 :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나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가 공히 신분증규칙을 제정하여 위원님들께 신분증을 발급해 드리도록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자체 규칙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 의사국장 민병수 : 먼저번에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이 신분증을 상당히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규칙을 제정할 수 없고 해서 그때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만들어 드리고자 교육부에서 협의를 하여 준칙으로 각 시·도가 공히 똑같이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의장 김영세 : 네.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시죠?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간 2일간의 회기동안 위원여러분께

<p>서 우리지역 교육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p> <p>이와같은 위원님들의 열의로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p> <p>또한 그동안 이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 준비와 회의운영에 협조하고 수고해주신 교육감님을 비롯</p>	<p>하여 부교육감님 이하 임직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기회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p> <p>이상으로 제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p> <p>(의사봉 3타)</p> <p>(11시 5분 폐회)</p>
<p>○ 출석위원수 : 10명</p> <p style="padding-left: 40px;">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p> <p>○ 출석공무원 : 33명</p> <p style="padding-left: 40px;">교육감 유성중, 부교육감 정인영,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신태희,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찬, 행정관리담당관 정현동, 총무과장 이근수,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중등교직과장 심태섭,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행정과장 엄갑도, 재무과장 고일영, 시설과장 박성근, 충청북도교육연구원장 박동기, 충청북도과학교육원장 김병학, 단재교육원장 남광현, 충청북도중앙도서관장 문종철, 충청북도학생종합야영장장 이종록, 청주교육장 양궁연, 충주교육장 권순무, 제천교육장 정철진, 청원교육장 김영명, 보은교육장 김천규, 옥천교육장 이희영, 영동교육장 정환수, 진천교육장 김석제, 괴산교육장 장병은, 음성교육장 박정서, 단양교육장 조시영.</p> <p>○ 간부명단 : 별첨 3</p> <p>○ 주요업무보고 : 별첨 4</p> <p>○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안 : 별첨 5</p> <p>○ 충청북도교육위원회청원심사규칙안 : 별첨 6</p> <p>○ 충청북도교육위원신분증규칙안 : 별첨 7</p>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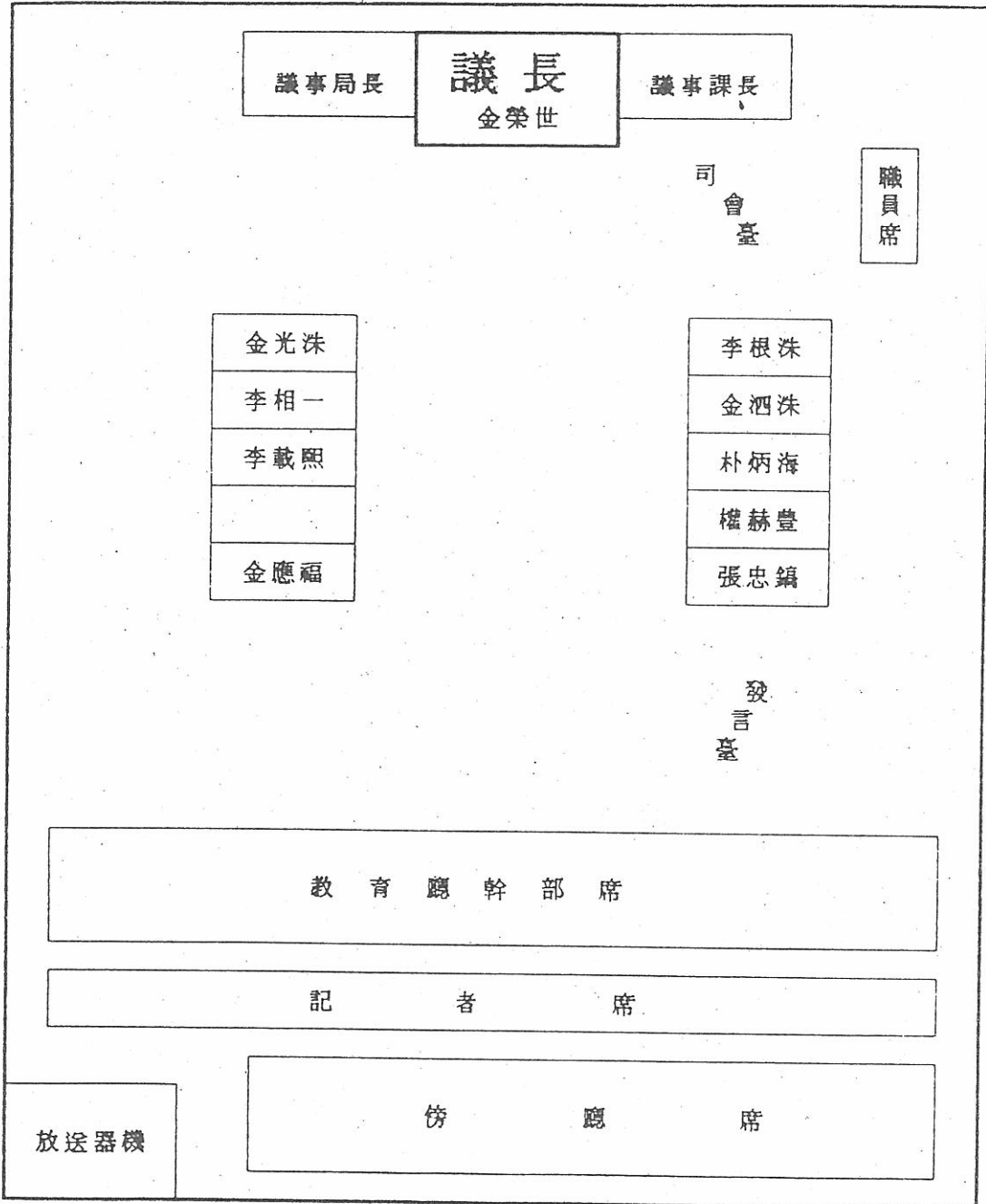
1) 교육위원 의석 배치도 .....	27
2) 의사일정(안) .....	28
3) 간부명단 .....	29
4) 주요업무보고 .....	35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안 .....	63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청원심사규칙안 .....	83
7) 충청북도교육위원신분증규칙안 .....	89



(별첨 1)

# 教育委員 議席 配置圖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별첨 2)

## 議事日程(案)

第 1 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1991. 9. 2. - 9.3.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9. 2(월) 10:00 11:30 14:00	1. 원구성 2. 제1회 충청북도교육위원(임시회)회기 결 정의 건 3. 개원식	○ 회 기 9.2-9.3. (2일간)
9. 3(화) 10:00 11:10	1. 교육청 업무보고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규칙 3건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안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청원심사규칙안 · 충청북도교육위원신분증규칙안	○ 보고 전 간부소개

(별첨 3)

# 幹 部 名 單

忠 清 北 道 教 育 廳





忠清北道教育廳

所屬	職位	職名	姓名	電話番號
忠清北道教育廳	教 育 監		劉成鍾	66-7711
	副 教 育 監	獎 學 官	鄭仁泳	66-7713
	初 等 教 育 局 長	獎 學 官	洪永昌	66-7716
	中 等 教 育 局 長	獎 學 官	羅世雄	66-7715
	管 理 局 長	書 記 官	金謹鶴	66-7714
	公 報 擔 當 官	地 方 行 政 事 務 官	申澤熙	66-7717
	企 劃 監 查 擔 當 官	行 政 事 務 官	李相贊	66-7718
	行 政 管 理 擔 當 官	地 方 行 政 事 務 官	鄭憲東	66-7719
	總 務 課 長	行 政 事 務 官	李近洙	66-7720
	初 等 教 育 局	初 等 獎 學 課 長	獎 學 官	蔡瑄乘
初 等 教 職 課 長		獎 學 官	金在聲	66-7722
中 等 教 育 局	中 等 獎 學 課 長	獎 學 官	尹赫重	66-7723
	中 等 教 職 課 長	獎 學 官	沈兌燮	66-7724
	科 學 技 術 課 長	獎 學 官	全泰植	66-7725
	社 會 教 育 體 育 課 長	獎 學 官	金相益	66-7726
	管 理 局	行 政 課 長	行 政 事 務 官	嚴甲道
財 務 課 長		行 政 事 務 官	高日永	66-7728
施 設 課 長		建 築 技 佐	朴成根	66-7729

直屬機關

所 屬	職 位	職 名	姓 名	電 話 番 號
忠 清 北 道 教 育 研 究 院	院 長	教 育 研 究 官	朴 東 起	54-2101
忠 清 北 道 科 學 教 育 院	院 長	教 育 研 究 官	金 炳 學	54-6391
丹 齊 教 育 院	院 長	獎 學 官	南 光 鉉	54-5911
忠 清 北 道 中 央 圖 書 館	館 長	地 方 書 記 官	文 鍾 哲	67-4594
忠 清 北 道 學 生 綜 合 野 營 場	場 長	地 方 書 記 官	李 鍾 祿	(0434) 33-4621

### 各教育廳

所 屬	職 位	職 名	姓 名	電 話 番 號
清州教育廳	教育長	獎學官	梁 兢 淵	66-6255
忠州教育廳	教育長	獎學官	權 純 武	(0441) 44-3211
堤川教育廳	教育長	獎學官	丁 哲 鎮	(0443) 44-7311
清原教育廳	教育長	獎學官	金 榮 明	56-3937
報恩教育廳	教育長	獎學官	金 天 圭	(0433) 2-2601
沃川教育廳	教育長	獎學官	李 熙 榮	(0475) 32-1311
永同教育廳	教育長	獎學官	鄭 煥 壽	(0414) 42-0021
鎭川教育廳	教育長	獎學官	金 錫 濟	(0434) 33-2760
槐山教育廳	教育長	獎學官	張 炳 殷	(0445) 33-0311
陰城教育廳	教育長	獎學官	朴 紘 緒	(0446) 72-4131
丹陽教育廳	教育長	獎學官	趙 時 英	(0444) 22-3200



(별첨 4)

1991. 9. 3.  
教育委員會

# 主要業務報告

忠清北道教育廳



# 順 序

I. 沿 革 .....	38
II. 一 般 現 況 .....	39
III. 忠北教育의 志向 .....	46
IV. '91 主要業務計劃 .....	47
V. 主要 懸案課題 .....	57

# I. 沿 革

- 1949. 12. 31. • 教育法 制定 (法律 第 86 號)
- 1952. 6. 4. • 市郡 教育自治制 實施
- 道文教社會局에서 文教行政 管掌
- 1962. 1. 6. • 市郡 教育自治制 廢止 (市郡 機構에 編入)  
(閣令 第 233 號 教育法改正法律 第 955 號)
- 道文教社會局을 教育局으로 改編
- 1964. 1. 1. • 道·市郡單位 教育自治制 實施  
(教育法改正法律 第 1435 號)
- 合議制執行機關인 道教育委員會 設置
- 教育委員會 職制 改正 (2局 4課)
- 1966. 10. 3. • 廳舍 新築 移轉 (清州市 榮洞 84)
- 1972. 12. 30. • 教育委員會 職制 改正 (大統領令 第 6349 號)
- 副教育監制 新設
- 教育委員會 課 增設 (2局 7課)
- 忠州市·中原郡教育廳 統合
- 1977. 9. 28. • 教育委員會 職制 改正 (大統領令 第 8709 號)
- 實業教育課 新設 (2局 8課)
- 1978. 3. 7. • 教育委員會 職制 改正 (大統領令 第 8881 號)
- 企劃監查擔當官室 新設 (2局 1擔當官 8課)
- 1979. 9. 1. • 廳舍 新築 移轉 (現 位置)
- 1981. 11. 19. • 教育委員會 職制 改正 (大統領令 第 10632 號)
- 副教育監制 廢止
- 實業教育課 廢止 (2局 1擔當官 7課)
- 1984. 4. 6. • 教育委員會 職制 改正 (大統領令 第 11401 號)
- 科學技術課 新設 (2局 1擔當官 8課)
- 1991. 3. 26. • 地方教育自治制 (廣域) 實施 (法律 4347 號)
- 教育委員會 — 審議議決機關
- 教育監 — 執行機關
- 教育長 — 下級教育行政機關



## II. 一般現況

1. 地域與件

2. 行政組織

3. 學校現況

4. 學校法人現況

5. 財政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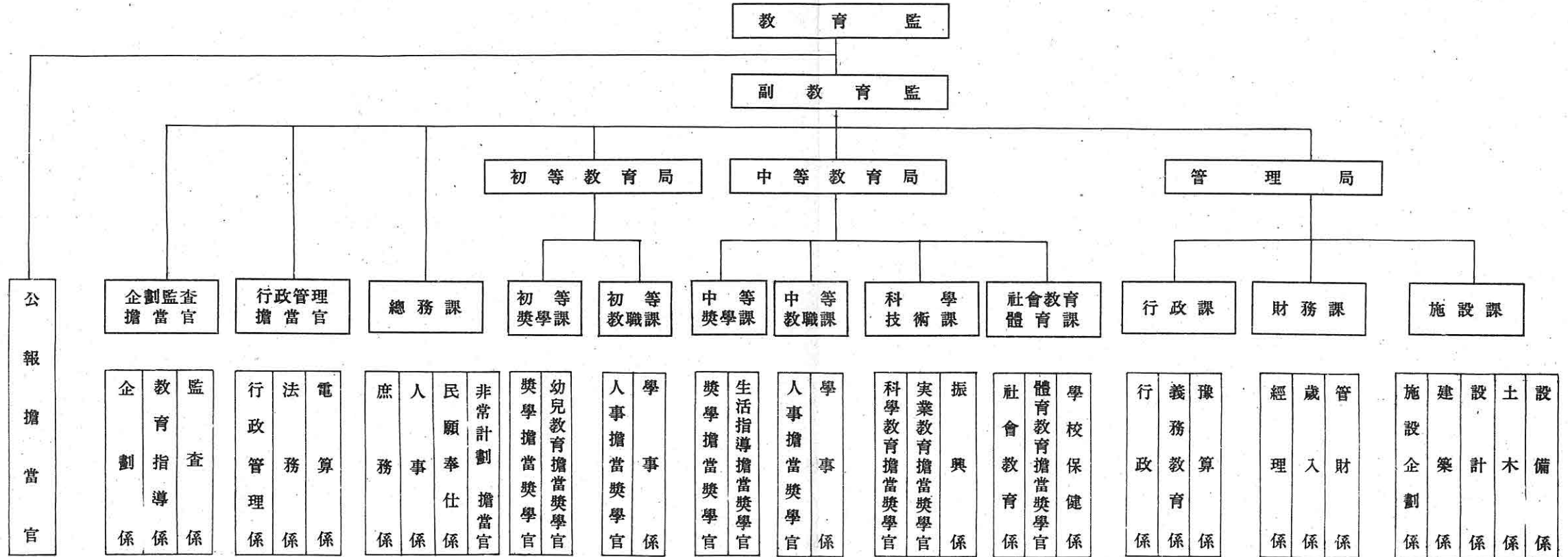
# 1. 地域與件

- 面積 : 7,436  $km^2$  (全國의 7.5%)
- 人口 : 1,414 千名 (家口數 355 萬)
- 行政區域 : 3 市 10 郡 158 邑面洞
- 就業構造 : 1 次產業 36.4%, 2 次 18.7%, 3 次 44.9%
- 地域의 特殊性
  - 忠·孝·禮의 崇尚과 教育·文化의 高揚
  - 世界最古의 印刷文化 發祥地
  - 豐富한 用水와 觀光資源
  - 國土의 中心部, 首都圈 隣接 內陸
  - 3 個의 高速道路 通過등 交通의 要衝地
  - 尖端産業施設 및 農工團地의 擴張
  - 離農增加에 따른 農村學生數의 激減

## 2. 行政組織

### ○ 機 構

• 本 廳：3局・3擔當官・10課・35係



- 直屬機關：9
- 下級教育行政機關：11(教育廳)
- 定 員：13,964名
  - 教 員：10,977名
  - 教 育 專 門 職：204名
  - 一 般 職：894名
  - 技 能 職：1,889名
- ※ 總教員數(國・私立包含)：13,107名



### 3. 學校現況

'91.6.30. 現在

區 分	學 校 數	學 級 數	學 生 數	教 員 數
計	886	8,165	319,182 全國對比 3.2%	13,107
幼 稚 園	374	598	15,794	710
國 民 學 校	326	4,318	149,146	5,299
中 學 校	109	1,610	75,863	3,449
高 等 學 校	68	1,446	72,082	3,387
特 殊 學 校	7	94	926	142
產 業 體 附 設 學 校	2	52	2,670	70
特 別 學 級	(4)	47	2,701	50

### 4. 學校法人現況

'91.6.30. 現在

法 人 數	學 校 數					教 員 數	學 生 數
	國	中	高	特 殊	計		
24	1	20	18	2	41	1,535	41,098

# 5. 財政現況

91.6.30. 現在

○ 款別內譯

(單位：千圓)

歲入		歲出	
款別	金額	款別	金額
1. 財產收入	1,497,995	1. 教育行政費	10,448,805
2. 使用料 및 手數料	24,344,101	2. 教育事業費	7,462,710
3. 實習收入	901,521	3. 國民學校費	100,128,281
4. 地方教育財政交付金	216,432,391	4. 學校費	101,923,438
5. 地方教育讓與金	46,093,000	5. 幼兒特殊教育費	4,241,961
6. 補助金	1,768,704	6. 施設費	12,768,826
7. 寄附金	325,230	7. 教育環境改善事業	17,721,896
8. 過年度收入	6,064	8. 過年度支出	139
9. 轉入金	1,231,671	9. 轉出金	12
10. 地方教育債	1	10. 自治團體에 대한 交付金	40,216,414
11. 雜收入	4,836,930	11. 償還金	27,400
12. 移越金	2,391,561	12. 豫備費	4,889,287
合計	299,829,169	合計	299,829,169

○ 性質別 內譯

(單位：千圓)

區 分		豫 算 額	構 成 比 (%)	備 考
歲 入	計	299,829,169	100	
	自體收入	34,303,402	11.4	
	依存收入	265,525,767	88.6	
歲 出	計	299,829,169	100	
	人件費	224,469,707	74.9	
	學校運營費	33,908,595	11.3	
	教育環境改善 事業費 및 施設費	30,493,771	10.2	
	行政 및 事業費	6,040,387	2.0	
	豫備費 및 其他	4,916,709	1.6	

### Ⅲ. 忠北教育의 志向

#### 教育의 目標

祖國의 先進化에 寄與할  
自主 · 創造 · 道德的 韓國人 育成

#### 教育行政의 方向

- 人 間 教 育 의 定 着
- 學 習 方 法 의 轉 換
- 教 育 環 境 의 改 善
- 教 育 의 主 人 찾 기

#### 教育의 本質 追求



## IV. '91主要業務計劃

1. 國民精神의 振作
2. 基礎教育의 充實
3. 科學·技術教育의 振興
4. 教育의 秀越性 追求
5. 國際化教育의 擴充
6. 教育環境의 刷新
7. 教育自治의 準備

# 1. 國民精神의 振作

## ○ 統一力量의 培養

- 民族共同體 統一指向教育
  - 愛國意識 培養 / 傳統文化의 繼承
  - 民主的 生活經驗의 擴大 : 討議文化 定着
- 民族分斷을 克服하는 教育
  - 民族의 和合과 同質性 回復
- 걸프事態 / UR 對備 經濟教育의 內實
  - 儉素한 生活 / 國產 學用品 愛用 / 에너지節約 實踐教育

## ○ 節制教育의 強化

- “ 잘 살기에서 바르게 살기 ” 로 社會氣風 造成
- 國民精神 改新 先導活動 : 學生運動 展開
- 學校에서 過保護 / 過消費 / 無規制의 排除
  - 禮節教育 : 基本生活習慣 指導 / 民主市民의 資質 涵養
  - 經濟教育 : 勤儉·貯蓄生活 / 先進經濟國의 跳躍기틀 造成
  - 秩序教育 : 家庭 / 學校 / 社會에서 自律的生活 教育
- 節制教育 行事を 통한 汎國民的 次元의 教育弘報 展開

## ○ 環境保全 教育의 活性化

- 自然사랑 教育의 強化
  - 天然資源에 대한 바른 認識 提高
  - 自然保護의 活性化 : 글짓기 / 그리기 / 雄辯
  - 環境監視의 自任
- 環境淨化 教育의 內實
  - 學校周邊 環境淨化 積極推進 : 地域社會와 連繫實施
  - 教育環境의 公園化 : 常綠樹 / 有實樹 造成
  - 고장의 觀光名所 清潔維持 : 休紙 / 汚物 되 가져오기

## 2. 基礎教育의 充實

- 學力觀의 轉換
  - 바른 學力觀의 定立
    - 教育本質의 回復 : 知/德/體/技의 均衡 調和
    - 合理的 意思決定能力 培養 : 價值觀의 定立
  - 學習方法의 轉換
    - 생각하고/짓고/만들고/키우고/뛰는 勞作學習
    - 自己學習力의 培養
    - 課外공부 없는 學習
    - 討議中心의 學習
    - 教育放送의 積極 活用
  - 創意力 伸張
    - 參考書 없는 教室 : 思考力 培養
    - 知識이 아닌 知慧 기르기 : 多樣한 學習資源의 活用
  - 初等教育
    - 基礎·基本生活習慣의 形成
    - 暗記爲主教育에서 思考·探究學習으로
  - 中等教育
    - 讀書生活의 習慣化
    - 入試爲主教育에서 人間教育으로
  - 特殊教育
    - 特殊教育 對象者의 早期判別 管理 : 精薄兒/肢體不自由兒
    - 特殊學校·學級 教育課程의 內實
- 入試方法의 改善
  - '94年 大入制度 改善對備 研究
  - 高校入試에 作文比重 擴大 : 個人差 考慮/9點 反映
  - 特性化 高校 入試制度 改善 : 內申·適性 反映

○ 評價方法의 改善

- 目標指向 評價觀의 定着
  - 評價結果의 教育的 再投入 : 學習結果物의 分析的 指導
  - 指導教師의 直接出題/採點 : 年1 - 2回
- 多樣한 評價方法의 適用
  - 主觀式評價 領域의 擴大 : 作文/論述能力 培養
  - 個人의 潛在能力을 啓發하는 評價 研究
- 褒賞制의 概念 轉換
  - 賞讚의 機會 擴大
  - 教科別 學力賞 및 技能/藝能賞의 對等處理

○ 健全한 學生文化의 形成

- 地域中心 綜合生活館의 建立
  - 生活現場에 適應시키는 實習教育場 : 4棟
  - 統·廢合된 學校 및 野營場 活用
  - 生活館 修鍊指針書 編纂 活用/專擔教師 配置
- 忠北學生會館의 完成
- 相談活動의 活性化
  - 地域特性에 맞는 相談 運營 : 3地域 5室
  - 進路/人口/性 教育의 充實
  - 事故 豫防教育의 積極化 : 藥物 誤·濫用

○ 忠北學生綜合野營場 機能 擴充

- 丹齋教育院의 學生修鍊機能 分離 吸收
  - 靑少年들의 心身鍛鍊/情緒醇化/趣味活動에 寄與
  - 靑少年 文化生活의 空間 提供 : 親交活動
- 宿泊棟 新築
  - 年中/中心生活館 修鍊活動 期待

### 3. 科學·技術教育의 振興

#### ○ 基礎科學教育의 充實

- 必須 實驗·實習單元의 徹底한 履行
  - 實驗·實習報告書 作成 授業展開 : 實驗室教育
  - 繼續觀察記錄의 習慣 形成
- 컴퓨터教育의 充實
  - 優秀學生 早期選拔 및 體系的 指導
  - 컴퓨터教育의 充實한 指導 / 컴퓨터教育센터 運營
- 教育用 컴퓨터 普及 擴大 : 1,411 臺

#### ○ 高校 教育體制 改編

- 一般系高校의 職業課程 併設 運營
  - 商業系列 設置 擴大 : 8 個校 ⇨ 9 個校 (周德高)
  - 家事·實業系列 設置 : 藥城女高 ('92)
  - 工業系列 設置 擴大 : 2 個校 ⇨ 5 個校  
(周德高, 槐山高, 丹陽高)
- 一般系高校의 實業系 轉換
  - 工高로 轉換 : 2 個校  
(米院高 ⇨ 米院工高, 金旺高 ⇨ 金旺工高)
  - 商高로 轉換 : 2 個校 (鎮川女高 ⇨ 鎮川商高,  
會坪女高 ⇨ 會坪商高)
  - 人文高 改編 : 1 個校 (鎮川高 ⇨ 男女共學)
- 農業系高校의 學科 改編
  - 淸州 農 高 : 造園, 食品加工科
  - 忠州 / 堤川農高 : 農機械, 造園, 食品加工科
  - 報恩農工高 : 化工科

- 工業系高校의 學科 新·增設
  - 機械科 : 清州機械工高 / 忠州工高 / 韓國鑛山工高
  - 電子科 : 清州機械工高

※ 期待效果

- 教育費 負擔으로 생기는 農村負債의 緩和에 寄與
- 大入競爭의 緩和과 進路早期選擇의 雰圍氣 造成
- '91.3.1. 人文 57 : 實業 43 達成  
                  人文 53 : 實業 47 ( 職業課程 包含 )
- '92.3.1. 人文 54 : 實業 46 達成  
                  人文 49 : 實業 51 ( 職業課程 包含 )

○ 清州圈域의 學校 再配置

• 背景

- 教育環境이 劣惡한 學校를 清州市近郊로 移轉
- 實業系高校 收容能力 擴大

• 內容

- 學校新設 : 1 個校 ( 忠北工高 )
- 學校移轉 : 6 個校 ( 高 4 校, 中 2 校 )
- 學校統合 : 2 個校 ( 男中·女中 )
- 學校改編 : 2 個校  
( 米院高 ⇨ 米院工高, 曾坪女高 ⇨ 曾坪商高 )
- 時 期 : '91. 3 月 着手 ⇨ '92.12 月 完了豫定

※ 期待效果

- 學校環境 ( 學校敷地 狹小 / 騒音 / 老朽施設 等 ) 의 改善
- 優秀한 技能人力 養成體制 確立
- 清州市 都市發展 및 交通難 解消에 寄與

## 4. 教育의 秀越性 追求

- 秀越性教育의 內實
  - 特殊(英才) 教育對象者의 體系의 管理
    - 幼稚園부터 高校까지
    - 科學, 藝·體能, 一般英才의 秀越性 啓發
    - 劃一性教育 脫皮 : 個性 伸張
  - 越班制 實施 研究
- 外國語教育의 活性化
  - 國際化에 能動的으로 對處하는 教育
    - 國民學校부터 多國語 特活課程 運營 : 會話中心
  - 高等學校의 第2 外國語 複數化 擴散
    - 第2 外國語 特別教室 運營
    - 多國語教育 示範市 持續 運營 : 忠州市 一般系高校
  - 多國語 口話大會 開催 : 國·中
- 高校 特性化 定着
  - 忠北體育高 開校(6 學級 規模) : '91.3.
    - 金川高 體育科 吸收
    - 體育選手의 系列化, 精銳化
  - 忠北科學高 運營의 內實
    - 英才次元 프로그램 開發 適用
  - 清州中央高 運營의 內實
    - 藝術系列 : 美術 / 音樂 / 舞踊科
    - 語學系列 : 多國語科(獨語, 佛語, 中語, 日語, 西·露語科)
  - 忠州市內 高校 多國語科 併設 推進 : '92.3. 開校
- 特性化 高校로 連繫하는 中·國校의 英才教育體制 確立
  - ※ 期待效果
    - 참다운 意味에서의 英才教育 接近
    - 入試爲主教育의 解消와 劃一化의 脫皮

## 5. 國際化 教育의 擴充

- 國際理解 教育의 強化
  - 外來文化에 대한 主體的 理解와 受容
- UR對備 教育의 強化
  - 市場開放에 따른 經濟教育의 內實
  - 農産物 輸入開放에 對處하는 教育
    - UR의 理解와 受容 : 農産物 交易의 秩序
    - 우리 農産物의 利用 擴大 : 傳統飲食 開發教育
    - 農民教育센터 設置 運營
  - 科學營農技術의 研究
    - 國際競爭力이 있는 優秀農産物의 開發
    - 農業機械教育의 活性化
    - 營農後繼者 教育 充實
    - 地域 高所得作物 栽培技術 普及
  - 知的 所有權問題의 바른 理解
- 國際交流의 擴充
  - 外國과의 結緣 및 訪問交流의 勸獎
    - 國際行事に 自律參與 支援
    - 教職員 國外研修의 內實
  - 外國語教師 國外 語學現地研修 擴大
    - 英語·獨語·佛語教師
- 在外 國民教育의 地域分擔 遂行
  - 在美/日/中/蘇 等



## 6. 教育環境의 刷新

- 學校環境의 改善
  - 教員勤務環境·老朽教育施設 等 : 174 億원
  - 教育施設工事 關聯 教員意見 收斂
  
- 私學의 均衡的 發展
  - 私立學校 財政缺陷額 支援 : 37 個校 110 億원
  - 私立教員의 公立交流 擴大
  - 私學에 대한 各種 支援 및 研修의 均衡維持
  
- 學校給食의 擴大 및 合理的 運營
  - 給食學校 運營의 內實
    - 僻地型 22 個校 / 農村型 24 個校 / 都市型 4 個校
  - 缺食兒童 給食費 支援
  - 給食學校의 指定 擴大 : 12 個校
  - 特殊學校 給食指定 : 8 個校
  
- 國校 3 複式學級의 解消
  - 3 複式學級 現況 : 5 個校 8 學級 ( '90 : 35 個校 54 學級 )
  - 解消對策 : 統·廢合 3 / 自然減少 2
  - 小規模國校 統·廢合 : 分教場格下 13 個校, 廢止 19 個校
  - 廢止學校 施設 教育的 再活用 推進
  
- ※ 期待效果
  - 教育課程의 充實한 履行으로 學習缺損 防止
  - 全人教育遂行을 위한 效率的인 學習展開 可能

## 7. 教育自治의 準備

### ○ 教育行政의 民主化

- 公開行政의 實現 : 人事 / 財政
- 教師와 學校의 苦衷을 풀어주는 獎學行政 具現
  - 教職의 뜻 모으기 / 教育의 자리잡기
  - 地域別 獎學協力體制의 活性化
- 學校長의 透徹한 教育觀에 의한 指導性 發揮
  - 學校經營에 無原則, 非合理性, 非民主性의 改善
  - 健全한 同好集團 및 教員團體의 支援 : 研究雰圍氣 造成
- 公職者 服務紀綱 確立의 持續的 推進
  - 意識改革과 資質向上 : 自律 / 創意 / 責任

### ○ 家庭·社會와 連繫한 教育機能 活性化

- 學父母 및 地域人士의 學校教育奉仕制 誘導
- 學父母와의 對話機會 擴大

### ○ 教育自治制의 定礎

- 教育自治制에 대한 올바른 理解와 弘報
  - 全教職員에 대한 教育 및 弘報 : 2月中
  - 講師招聘 巡廻教育 : 本廳 / 直屬機關 / 各 教育廳
- 教育自治 準備 徹底
  - 教育自治制 準備委員會 運營 活性化
  - 法規整備 / 業務移讓 / 行政機構 및 定員 再調整 推進
  - 會議室 및 豫算確保 講究

## V. 主要 懸案課題

### 1. 忠北學生會館 建立

○ 目 的

- 全人教育을 위한 學生文化 創造의 綜合活動 場 造成
- 青少年의 健全한 價値觀 形成

○ 事業規模

- 敷 地 : 3,240  $m^2$  ( 800 坪 )
- 延建坪 : 4,724  $m^2$  ( 1,429 坪 )
- 層 數 : 6 層 ( 地下 1 層, 地上 5 層 )
- 位 置 : 清州市 榮洞 79 番地
- 用 途 : 教育研究院 / 學生圖書館 / 青少年相談室 /  
會議室 / 展示室 / 體育 · 文藝活動 空間 提供

○ 事業期間

- 1989. 1. ~ 1991. 11.

○ 期待效果

- 青少年의 心身鍛鍊, 情緒醇化, 趣味活動의 場 造成
- 學生事故 豫防教育의 積極 圖謀

○ 豫算所要額 : 17 億 4 千萬원

- 自 體 : 12 億 4 千萬원
- 國 庫 : 5 億원

## 2. 忠北學生綜合野營場 宿泊棟 및 生活館 新築

### ○ 目 的

- 青少年의 身體的 · 情緒的 健康增進
- 青少年의 自我發見 및 餘暇觀 定立

### ○ 事業規模

- 延 建 坪 : 1,624.3  $m^2$  ( 492 坪 )
- 層 數 : 5 層 ( 地下 1 層, 地上 4 層 )
- 收容人員 : 170 名
- 位 置 : 鎮川郡 文白面 銀灘里 忠北學生綜合野營場內

### ○ 事業期間

- 1991. 7. ~ 1992. 5.

### ○ 期待效果

- 宿泊棟設置로 인한 冬節期 野營活動 期待
- 丹齋教育院 學生修鍊機能 吸收

### ○ 豫算所要額 : 6 億 3 百萬圓

- 自 體 : 1 億 3 百萬圓
- 國 庫 : 5 億

### 3. 清州圈域의 學校再配置

- 目 的
  - 教育環境의 人間化 圖謀
  - 實業系高校 收容能力 擴充 및 技能人力 培養
- 方 針
  - 一般系高校 學級減縮으로 實業系高校에 增設
  - 一部 私學機關(中·高)의 清州市 郊外 移轉 勸誘
- 對象學校
  - 學校新設 : 1 個校(忠北工高)
  - 學校移轉 : 高 4 個校/中 2 個校
  - 學校統合 : 2 個校(男中, 女中)
  - 學校改編 : 2 個校(米院高⇒米院工高, 會坪女高⇒會坪商高)
- 施行期間
  - 1991. 3. 1. ~ 1992.12.31.
- 期待效果
  - 學校環境(學校敷地 狹小/騒音/老朽施設 等)의 改善
  - 優秀한 技能人力 養成體制 確立
  - 清州市 都市發展 및 交通難 解消에 寄與

## 4. 忠北體育高等學校 設立

### ○ 目 的

- 體育英才의 早期發掘 指導
- 體育 專門教育의 實施로 體育人의 底邊擴大
- 體育 優秀選手 및 指導者 育成

### ○ 設 立

- 設 置 : 清州市 體育施設團地內 忠北水泳場 敷地
- 學校規模 : 總 6 學級 240 名 ( 學年當 2 學級 ( 男 · 女 ) ,  
級當 40 名 ) 教室 12 室 / 寄宿舍 240 坪 /  
其他 附帶施設
- 設立方法 : 現 金川高 體育科 分離 吸收
- 開 校 : '91. 3. 1.

### ○ 設立運營方案

- 清州市 綜合體育施設團地內 體育施設을 學校 教育實習場  
으로 活用
- 學校施設은 道教育廳이 設立하여 清州市에 寄附採納하고  
寄附採納後 學校施設로 無償 永久使用
- 清州市는 都市計劃 變更등 學校設立에 必要한 措置 講究

### ○ 期待效果

- 綜合體育施設團地의 既存施設 活用으로 豫算節減 效果  
( 新設時 200 億원 所要 推定 )
- 優秀選手의 早期發掘 및 科學的 / 組織的 訓練으로 有能한  
體育人과 國家代表選手 育成

### ○ 豫算所要額

- 總所要額 : 19 億원
- 確 保 額 : 6 億 4 百萬원  
( 體育會 3 億원, 忠清北道 3 億 4 百萬원 )
- 不 足 額 : 13 億원 ( 體育青少年部에 建議中 )

## 5. 丹陽工業高等學校 寄宿舍 마감工事

### ○ 目 的

- 地理的으로 奧地인 丹陽工業高等學校에 寄宿舍를 完成함으로써, 遠距離 通學生 및 寄宿舍 利用 希望學生들을 모두 收容하여 有能한 技能人力 養成에 이바지하고자 함.

### ○ 事業規模

- 位 置 : 丹陽郡 丹陽邑 北下里 丹陽工業高等學校內
- 規 模 : 2,081  $m^2$  (地下 1層, 地上 3層)
- 寄宿舍 收容現況

收容對象學生數	寄宿舍 收容能力	不 足	備 考
169 名	104 名	65 名	

- 豫算所要額 : 6 億 4 千 7 百萬원
  - 既投資額 : 4 億 6 千 7 百萬원
  - 不 足 額 : 1 億 8 千萬원 (3層 內部施設)
- 工事推進實績
  - 骨組工事 完了 : '84. 4. - '84. 9.
  - 2層工事 完了 : '87. 9. - '87. 12.
- 向後工事計劃 : 寄宿舍 3層 (12室 - 647  $m^2$ ) 마감工事

- 對 策 : 不足額 自體確保





(별첨 5)

## 교육위원회회의규칙(안)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5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내부규율등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전문성 및 능률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등록등) ① 교육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사담당관에게 제시하고 등록한다.

② 위원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③ 위원회의 의석은 의장이 정한다. 다만, 교육위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최초의 임시회의 경우에는 의사담당관이 교육위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 3 조(선서) 위원은 임기초에 위원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우리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위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 2 장 회 의

#### 제 1 절 회의의 개폐

제 4 조(회기)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1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일, 임시회의 회기는 5일이내로 한다.

③ 회기의 연장은 의결로써 이를 정하되, 연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한다.

⑤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 5 조(회의에 관한 결정·선포) ① 위원회의 개의시간은 의장이 정한다.

② 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여 선포한다.

③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학생의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조(휴회) ① 위원회는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휴회중인 경우 교육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 7 조(결석) 위원이 신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미리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 2 절 의 사 일 정

제 8 조(의사일정의 작성과 변경등) ① 의장은 개의일시·장소·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의사일정을 의결로써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이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 3인이상의 동의로써 하되 토론을 생략하고 그 가부만을 결정한다.

③ 의장은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와 장소만을 위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 9 조(의사일정의 조정)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일정을 다시 정한다.

### 제 3 절 의 안 및 동 의

제 10 조(의안의 제출·발의) 위원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교육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 11 조(의안의 부의 또는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위원에게 배부하고 위원회에 보고·부의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회기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 12 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은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의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 13 조(의안의 동의등) ① 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자의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②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위원 3인이상의 연서로써 하되 이유를 기재하여 미리 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찬성없이 이를 의제로 한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그 원안을 심의하는 동안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대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 14 조(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 ① 위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의 찬성으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동의를 한 자가 각각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의안 또는 동이가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그가 제출한 의안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제가 된 때 이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5 조(변안) 변안동의를 위원회에 있어서는 이를 발의한 위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써, 소위원회에 있어서는 이를 발의한 위원의 1인의 동의로써 각각 이를 행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안건이 교육감에게 이송된 때, 소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변안할 수 없다.

제 16 조(안건심의)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제안취지 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써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들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이를 소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교육감일 경우 위원회는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 17 조(의안의 정리) 위원회는 의안을 의결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 4 절 발 언

제 18 조(발언의 통지 및 허가) ①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는다. 이 경우 질의에 있어서는 그 요지를, 토론에 있어서는 반대 또는 찬성의 의사를 기재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위원은 통지를 한 위원의 발언이 끝난 후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 19 조(발언의 장소) ① 위원은 의석에서 발언한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위원에 대하여 등단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 20 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증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가 재개된 때 우선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1 조(의제의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 22 조(발언회수의 제한)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발의자·동의자 또는 위원장이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3 조(발언시간등) ① 위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이내로 한다.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나머지 발언내용을 의장에게 제출할 경우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 24 조(보충발언)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소위원회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 25 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난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 26 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위원 2인이상의 발언이 끝난후에는 발언예정자가 있다하더라도 위원회의 의결로써 질의나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 5 절 표 결

제 27 조(표결의 선포등) ①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로써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이미 표결로써 행한 의사는 이를 다시 변경하지 못한다.

제 28 조(표결방법) ① 의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의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행하는 각종의 선출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④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29 조(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위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의장은 위원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으로 하여금 부·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행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위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 30 조(수정안의 표결순서등)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두개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위원의 수정안은 소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위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 31 조(표결결과와 선포) ①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② 의장은 의제에 대하여 발언이 없거나 반대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 제 6 절 회 의 록

제 32 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증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성명
6. 위원의 이동 또는 의석의 배정·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 및 그 이송 또는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또는 투표자의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위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기록한다.

제 33 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과, 위원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위원 및 의사담당관이 서명 날인한다. 이 경우 선출된 위원은 당해 회기의 회의록에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 34 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위원·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전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위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제 35 조(회의록의 배부·공개) ① 회의록은 이를 위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는 경우와 학생교육 또는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의장이 발언자와 협의하여 그 배부·공개되는 회의록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록 내용의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허가받은 위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거나 전제·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⑤ 회의록의 발간과 배포방법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 3 장 소위원회

제 36 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과 심사기일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경우 의장은 소위원회가 그 기간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 안건을 바로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소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조례·청원심사소위원회
2.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3. 예산·결산소위원회
4. 감사·조사소위원회

④ 제3항 각호의 소위원회는 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되, 그 소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활동을 종료한다. 이 경우 심사중인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이 위원회에 부의한다.

제 37 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선임하되 의장이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임된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만, 감사·조사소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위원장은 그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8 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소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39 조(위원회의 회의중 소위원회 개회)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 40 조(동의) 소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의 1인이상의 찬성으로써 의제가 된다.

제 41 조(소위원회의 심사) ① 소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축조심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그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교육감일 경우와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 42 조(소위원회위원의 발언) ① 소위원회위원은 소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발언회수·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발언방법을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위원회위원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제 43 조(발언 청취 및 방청) ① 의장은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안전에 관하여 소위원회위원이 아닌 위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 44 조(의사·의결정족수) ①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45 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소위원회가 안전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2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 46 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의 회의에서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 47 조(소위원회 회의록) ① 소위원회는 소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증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소위원회위원 아닌 위원의 성명

5. 출석공무원·진술인의 성명
6. 심사 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소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위원회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소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소위원회에서의 발언 내용은 이를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 ③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날인 한다.

## 제 4 장 예산안 및 결산의 심의 또는 심사

제 48 조(예산안의 심의 또는 심사) ① 위원회는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한 때에는 제36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이를 회부한다.

③ 의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한다.

제 49 조(예산안의 수정 동의)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 50 조(예산안의 의결) ① 위원회에서 직접 예산안을 심의한 경우에는 예산각부문의 심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② 예산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안을 위원회에 부의하여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 51 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재심사를 하거나 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 52 조(결산의 심의 또는 심사) 결산의 심사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5 장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제 53 조(교육감등의 출석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의장을 경유하여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교육감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 54 조(교육감에 대한 서면 질문) ① 위원은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의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교육감이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55 조(교육감등의 출석·발언)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6 장 사직 및 징계·자격심사

제 56 조(위원의 사직) ① 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에 대한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포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 57 조(징계·자격심사의 청구등) ① 위원이 다른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징계를 청구하는 때에는 위원 3인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법 제24조(지방자치법 제78조 준용)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이를 행할 경우에는 위원에게 징계청구요지서를 배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중 징계청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차기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 또는 자격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징계자격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징계에 관한 회의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징계대상자인 피심위원의 출석·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징계 또는 자격심사청구서를 위원회 또는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피심위원에게 그 내용을 송달하며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 58 조(답변서의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 또는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피심위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기한을 정하여 다시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 59 조(심문과 발언) ① 위원회 또는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의장인 경우에는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출석할 수 있다.

② 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은 위원회 또는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위원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 60 조(징계의 의결)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되었거나 징계자격심



사소위원회로부터 징계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의결한다.

② 피심위원은 자신의 징계에 관한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 61 조(자격상실의 의결) ① 위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③ 피심위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제 7 장 질 서

제 62 조(경호) ① 의장은 위원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 63 조(위원의 질서유지 의무등) ① 위원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발언 또는 행위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등 인쇄물의 배포 또는 녹음·녹화 및 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또는 반입
6. 폭력행사등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배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 64 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위원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위원은 모욕을 가한 위원에 대하여 의장에게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위원의 찬성없이 모욕을 당한 위원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 65 조(의장의 제지등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위원) 회의장에서 의장의 경고·제지 또는 발언취소등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의장이 이를 징계에 부의할 수 있다.

제 66 조(방청인 준수사항등) ① 회의장에는 위원·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의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음주를 한 자
3. 정신이상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③ 방청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허가없이 입장하는 행위

2. 모자·의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7. 의안 또는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 67 조(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사담당관이 그 수를 정하여 교부한다.

③ 의장은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기관의 직원에게는 1회기 동안 통용할 수 있는 방청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⑤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68 조(녹음·녹화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안(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또는 증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차는 매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소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직원은 기록보존등을 위하여 회의장내에서 녹음·녹화·촬영등을 할 수 있다.

## 보 칩

제 68 조(기간의 기산일) 이 규칙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 부 칩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을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구성된 교육위원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1973년 1월 25일, 교육규칙 제45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첨 6)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청원심사규칙(안)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의 준용)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청원서의 제출) ① 위원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청원서에는 소개한 위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한다.

제 3 조(청원서 보완요구) 위원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4 조(불수리 사항의 봉지) ①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위원과 청원인에게 봉지하여야 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한 내용의 청원을 2개기관이상에 제출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② 청원이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

은 소개위원을 경유하여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의장은 그 사유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할 수 있다.

제 5 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인쇄·배부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의결로써 청원심사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를 회부할 수 있다.

③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위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④ 소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의 회부일부터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 6 조(소개위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위원은 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한다.

제 7 조(청원인등 진술) ① 소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위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참고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당해 위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위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가 의결

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 9 조(심사보고) 소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1.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
2. 위원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

제 10 조(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①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심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조치하였거나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어긋나는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위원회에서 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된 청원에 대하여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감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소위원회에의 회부
2.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교육감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
4. 제10조 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위원회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 13 조(청원의 철회등) ①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위원이 서명날인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위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위원이 서명·날인 한다.

② 청원은 그 청원을 소개한 위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4 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위원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지방자치법 제62조 준용)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 15 조(준용규정)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청원 소개 의견서

청원건명			
청원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개교육위원		인	
소개년월일			
<u>소개의견</u>			

(별지 제2호 서식)

## 청원철회요구서

청원건명			
청원인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소개교육위원	인		
청원제출일자		청원철회일자	
<u>철회요구사유</u>			

(별첨 7)

## 충청북도교육위원신분증규칙(안)

-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위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재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 제 3 조(신분증의 규격, 재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위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규격, 재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 4 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 5 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6 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위원이 사직 또는 퇴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전 면

재 호		사 진	
<b>교육위원신분증</b>			
성 명	_____		
주민등록 번호	_____		
상기자는 충청북도교육위원임을 증명함. 199 년 월 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장			
← 1.5 →		← 4.1 →	
← 8.1 →		← 2.5 →	
		↑ 0.5 ↓	
		↑ 20 ↓	
		↑ 30 ↓	
		↑ 55 ↓	

후 면

<b>주 의 사 항</b>
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1. 사진규격등

- ① 사진(3.0cm × 2.5cm)
- ② 성명(흑색모필토 기입할 것)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교육위원 신분증	16포인트	고 덕 체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장	14포인트	고 덕 체
상기자는 ...증명함	10.5포인트	고 덕 체
기 타	8포인트	명 조 체

3. 지질은 인쇄용지 190g/m<sup>2</sup>으로 한다.

4. 신분증은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5.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 수 있도록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교육위원신분증발급대장

결재란	위원증 번호	발년월일 급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신재발급 규급	회여 수부	제사 발급유	일회 시수	반 환	사 진	비 고

380mm × 268mm  
(인쇄용지(특급) 70g/m<sup>2</sup>)

(별지 제2호 서식)

### 교육위원신분증재발급신청서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위원증번호:

4. 재발급신청사유:

첨부: 사진 2매

위와 같이 교육위원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199 . . . . .

신청인 (인)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장 귀하

190mm × 268mm  
(신문용지 54g/m<sup>2</sup>)